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3. 12. 12.(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안동 오류현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 |
| 2 |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내 비가림시설 설치 | |
| 3 |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1) | |
| 4 |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2) | |
| 5 |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3) | |
| 6 |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4) | |
| 7 |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집 및 담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
| 8 |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가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
| 9 | 안동 하회마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 |
| 10 | 경주 양동마을 주변 도로선형 개선공사 | |
| 11 |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 | |
| 12 |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재심의) | |
| 13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재심의) | |
| 14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 | |
| 15 |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 | |
| 16 | 예산 수당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 |
| 17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허가사항 변경(재심의) | |
| 18 |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 | |
| 19 |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숲가꾸기 사업 | |
| 20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 |
| 21 |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입목식재 | |
| 2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보고사항】

- | | | |
|----|-----------------|--|
| 23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안동 오류현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오류현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오류현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이격거리 210m)에 해당함
- ※ 제12차 경상북도 건축분과위원회('23. 12. 1.) : 부결
 - 문화재 인접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패널의 방향 및 규모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오류현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 (임하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76-1, 576-6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공사
 - 건축면적 : $583.69\text{m}^2 (330\text{m}^2 + 253.69\text{m}^2)$
 - 태양광 설치면적 : $458.53\text{m}^2 (248.6\text{m}^2 + 209.93\text{m}^2)$
 - 설치용량 : $99.6\text{kW} (54.0\text{kW} + 45.6\text{kW})$
 - $600\text{W} \times 90\text{ea} = 54.0\text{kW}$
 - $600\text{W} \times 76\text{ea} = 45.6\text{kW}$
 - 최고높이 : 9.597m(기존건축물 높이 7.5m 포함)

2.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내 비가림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내 비가림시설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104 (서내리)
- (3) 신청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104 (서내리)
- (4) 신청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
 - 시설규모 : 2.7×2.7×2.3m
 - 구조 : 초가이영잇기(3겹 1단기준, 3단 잇기)
 - 군새깔기 T=150, 알매흙다짐 T=100, 산자엮기
 - 도리 120×150, 각재 30×60

3.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1)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365m)에 해당함
- ※ 3구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무기1길 33 (무기리)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20-17, 921-1, 924, 1166-192
- (4) 신청내용 : 공장 신축(공장, 사무실·숙소)
 - 부지면적 : 650.0㎡
 - 건축면적/연면적 : 342.3㎡ / 390.3㎡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공장), 지상 2층(사무실·숙소) / 11.77m
 - 구 조 : 일반철골조

4.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2)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360m)에 해당함
- ※ 3구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무기1길 33 (무기리)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20-17, 921-1, 924, 1166-192
- (4) 신청내용 : 공장 신축(공장, 사무실)
 - 부지면적 : 979.0㎡
 - 건축면적/연면적 : 602.53㎡ / 598.28㎡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공장), 지상 2층(사무실) / 10.1m
 - 구 조 : 일반철골조

5.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3)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으로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350m)에 해당함
 - ※ 3구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무기1길 33 (무기리)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20, 924-8, 1166-194
- (4) 신청내용 : 공장 신축(공장, 사무실·창고)
 - 부지면적 : 613.0㎡
 - 건축면적/연면적 : 383.94㎡ / 428.94㎡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공장), 지상 2층(사무실·창고) / 9.45m
 - 구 조 : 일반철골조

6.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4)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신축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350m)에 해당함
 - ※ 3구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무기1길 33 (무기리)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20, 924-8, 1166-194
- (4) 신청내용 : 공장 신축(공장, 사무실·숙소)
 - 부지면적 : 548.0㎡
 - 건축면적/연면적 : 381.61㎡ / 411.36㎡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공장), 지상 2층(사무실·숙소) / 9.45m
 - 구 조 : 일반철골조

7.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집 및 담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집 및 담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집 및 담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 ※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0. 10. 13.) : 조건부가결
 - 대지 내 초가 배치, 규모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 제8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 8. 8.) : 부결
 - 문화재경관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35-8
- (4) 변경내용 : 초가집 및 담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 분	허가사항	부결(2023.8.8.)	금번 변경 신청
부지면적	1,445.0m ²	좌 동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29.94m ²	좌 동	좌 동
건축규모	지상 1층	좌 동	좌 동
최고높이	4.42m	좌 동	좌 동
싸리문·울타리	28m	25m	25m
건물이동	-	배면 1.8m	-
거친돌 석축	-	L=34.0m, H=0.6m	-
자연석 석축	24m	-	25m(거친돌 석축) H=0.4m~1.1m
기타 변경	-	온돌, 창호, 입면	온돌, 창호, 입면

8.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가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가옥 신축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가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 ※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 3. 14.) : 원안가결
 - ※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 7. 11.) : 부결
 - 하회마을 내 전통적인 초가 양식에 맞지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0
- (4) 변경내용 : 초가가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 분	허가사항	부결(2023.8.8.)	금번 변경 신청
부지면적	281.0m ²	좌 동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42.12m ²	좌 동	좌 동
최고높이	4.425m	좌 동	좌 동
싸리나무 담장	65m	-	48m
기 초	생석회 잡석다짐 (줄기초)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석축 설치 배수로 설치	-	L=21.0m, H=0.9~1.0m L=14.5m, H=0.2~0.25m	-
기타 변경	-	-	칸막이·천장틀 제거 창호 설치

9. 안동 하회마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54, 256, 1152(하회마을 제1주차장)
- (4) 신청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 규모 : 급속충전기 3대(2.1m×1.4m, H=2.4m)
 - 형식 : 듀얼-옥외형, 100kW
 - 주차면 : 6면(3.0m×5.0m), 주차 방지턱 설치, 주차면 도색

10. 경주 양동마을 주변 도로선형 개선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주변 도로선형 개선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주변 도로선형 개선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69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대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711-1번지 일원
- (4) 신청내용 : 도로선형 개선공사
 - 도로선형 개선 : 180m(배수개선 포함)
 - 토공 : 터파기(44m³), 되메우기(35m³), 아스팔트 깨기(122m³), 흙쌓기(392m³)
 - 배수공 : L형측구(160m), PE관 부설(160m), 집수정 19개소(H=0.5m) 설치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851m², 기층 및 표층)
 - 부대공 : 차선도색(73m²), 도로반사경 철거 및 설치

11.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가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 소 재 지 : 전남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4 (제월리)
- (3) 신청위치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6-1
- (4) 신청내용 : 버스정차대 정비
 - 토공 : 절토(106m³), 성토(76m³), 터파기(150m³), 되메우기(32m³), 사토운반(148m³)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163m², B=0.3~2.3m), 콘크리트포장(12m², B=3m, T=0.2m), L형측구 설치(L=37m)
 - 구조물공 : 옹벽블록 설치(L=57m, H=1.8~2.8m / L=36m, H=1.0~3.1m)
 - 가드레일 제설치(L=25m), 버스정차대 설치

12.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재심의)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20m)에 해당함
 - ※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2.14.)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 ※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5.9.)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 ※ 제10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10.10.)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6
- (3)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옷골로 189(둔산동 366)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구분	1차 심의 (‘23.2.)	2차 심의 (‘23.5.)	3차 심의 (‘23.10.)	금회
설치면적	26㎡	31.32㎡	31.32㎡	31.32㎡
발전량	5kW	5kW	5kW	5kW
태양광 최대높이	3.3m	2.3m	1.988m	1.9m

* 설치대상 건물높이 : 4.5m

13.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70m)에 해당함
 - ※ ‘22년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2.8.9.) : 조건부가결
 - 건물의 형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 지붕은 한식기와로 할 것
 - ※ 제8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8.8.)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 제10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10.10.) : 보류
 - 도면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99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한식목구조 / 지붕 : 한식기와

구분	기허가	금회
안채	·건축면적 : 96.55m ²	·건축면적 : 99.07m ² ·보일러실 설치(2.52m ²)
사랑채	·건축면적 : 51.03m ²	·건축면적 : 53.19m ² ·보일러실 설치(2.16m ²)
주변	-	·거친돌석축(2단) 설치 : L=46m, H=0.9m(평균), 화계 설치 ·거친돌계단 설치 : 폭 1.85m ·돌각담 설치 : L=71.3m, H=1.3m, W=0.8m ·싸리문 설치 : W=2.0m, H=1.77m ·차폐수목 식재

14.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43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262
- (4) 신청내용 : 공장 1개동 증축
 - 대지면적: 95,141.90㎡
 - 건축면적/연면적
 - 증축: 13,444.24㎡/37,138.74㎡(기존: 29,368.97㎡/52,407.51㎡)
 - 최고높이: 52.3m(층수: 지상 3층)
 - 건축구조: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
 - 절·성토 없음

15.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40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102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772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 대지면적: 1,392m²
 - 설치면적: 472m²
 - 설치높이: 3.06m
 - 기존건물높이: 3.77m
 - 발전용량: 99.96kwp

16. 예산 수당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예산 수당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예산 수당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11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예산 수당고택」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323 외 2필지
- (4) 신청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 대지면적: 3,829㎡
 - 부지조성면적: 2,589㎡(태양광 설치 1,991㎡, 진입도로 598㎡)
 - 태양광 설치높이: 2.363m
 - 발전용량: 198.38kW
 - 대지면적: 3,829㎡
 - 메쉬휀스설치: H=1.2m, L=202m
 - 수목식재: 측백나무 70주(H=2.0m, W=0.6m)
 - 집수맨홀 5개소 설치, 녹지조성 등

17.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허가사항 변경(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390m)에 해당함
- ※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회의(‘23.1.10.) : 원안가결(신청인: 박기훈, 배영옥)
- ※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회의(‘23.2.14.)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신청인: 박기훈))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예천 물체당 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3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62-1, 62-3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허가사항 변경

구분	기 허가		1차 변경 (부결)	2차 변경 (금회)	
신청인	박기훈	배영옥	박기훈	박기훈	배영옥
위 치	율현리 62-3	율현리 62-3	율현리 62-1, 62-3	율현리 62-1, 62-3	율현리 62-3
설치면적	464㎡	464㎡	2,784㎡	1,840㎡	460㎡
발전량	99.96kW	99.96kW	599.76kW	398.2kW	99.55kW
태양광 높이	1.5m (설치 후 8.3m)	1.5m (설치 후 8.3m)	2.12m (설치 후 9.3m)	1.5m (설치 후 8.3m)	1.5m (설치 후 8.3m)

18.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05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청송 송소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1개동 증축
 - 대지면적 : 1,707㎡

구분	기존 건축물(3개동)	금회 증축
건축면적/연면적	160.1㎡	82.44㎡
구조	일반목구조/한식기와	일반목구조/한식기와
층수/높이	지상1층/5.4m(1동), 4.9m(2동), 4.69m(3동)	지상1층/4.35m

19.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숲가꾸기 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숲가꾸기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 1097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 160, 163
- (4) 신청내용 : 숲가꾸기 사업
 - 사업면적: 26,050m²
 - 입목재적: 약 4,500주(4,509m³)
 - 제거대상: 소나무 약 758주, 굴참나무 등 약 1,947주
 - 잔존수량: 약 1,804주
 - 산 경계부로부터 약 20m 전체 벌목

20.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보도연맹사건추정지(이격거리 23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80 외 2필지
- (4) 신청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개동 증축
 - 대지면적: 4,375㎡

구분	기존 건축물	금회 증축
건축면적/연면적	251.47㎡	216㎡(12㎡ x 18동)
구조/용도	경량철골구조/소매점,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일반음식점
층수/높이	지상1층/6.4m	지상1층/3.9m

21.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입목식재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입목식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입목식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311-20
- (4) 신청내용 :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을 위한 입목식재
 - 부지면적: 12,552㎡ 중 4,746㎡
 - 식재계획: 호두나무 H=1.5m, 489주
 - 임도설치: B=2.0m, L=169m
 - 상수관로 매설: D=150mm, L=50m, 상수맨홀(1EA),
 - 토사수로: 300×300mm, L=288m

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금성당」 등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보존정책과 주관 연구용역 실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 2021년 용역(인천, 경기, 부산 200건)
 - 2022년 용역(서울, 대전, 울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제주 378건)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금성당」 등 5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금성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57-23
2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3번길 65
3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현 고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4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조길방 고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5	국가민속문화재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423-66, 1223-9

(2) 변경내용: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현행화 및 용어 표준화**

- 문화재청 훈령 제652호(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변경(별표1 반영)**
- <별첨: 세부내용> 참조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금회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 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차, 2차) 결과에 따라 신청하게 된 사항임
- 다만, 용역 기간에 따라 일부 문구나 단어가 다르므로 최근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문화재청 훈령 제652호, 2023.10.31.)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하고자 함
예시) (‘21년)기준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22년)기준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참고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 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구 분	적용 대상 구역	비고
1구역	개별검토 구역	
	-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구역	
2구역	고도제한 구역	
	-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 ※ 하나의 문화재에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의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이 총 4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기준을 두는 지역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으로 구분	
3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	
4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 구역	
	- 다른 문화재(지방문화재 등)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복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	

<허용기준 작성 예시>

1.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구역이 모두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3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2-4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기념물 ○○○○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2. 개별검토 구역이 없고 고도제한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3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2-4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3.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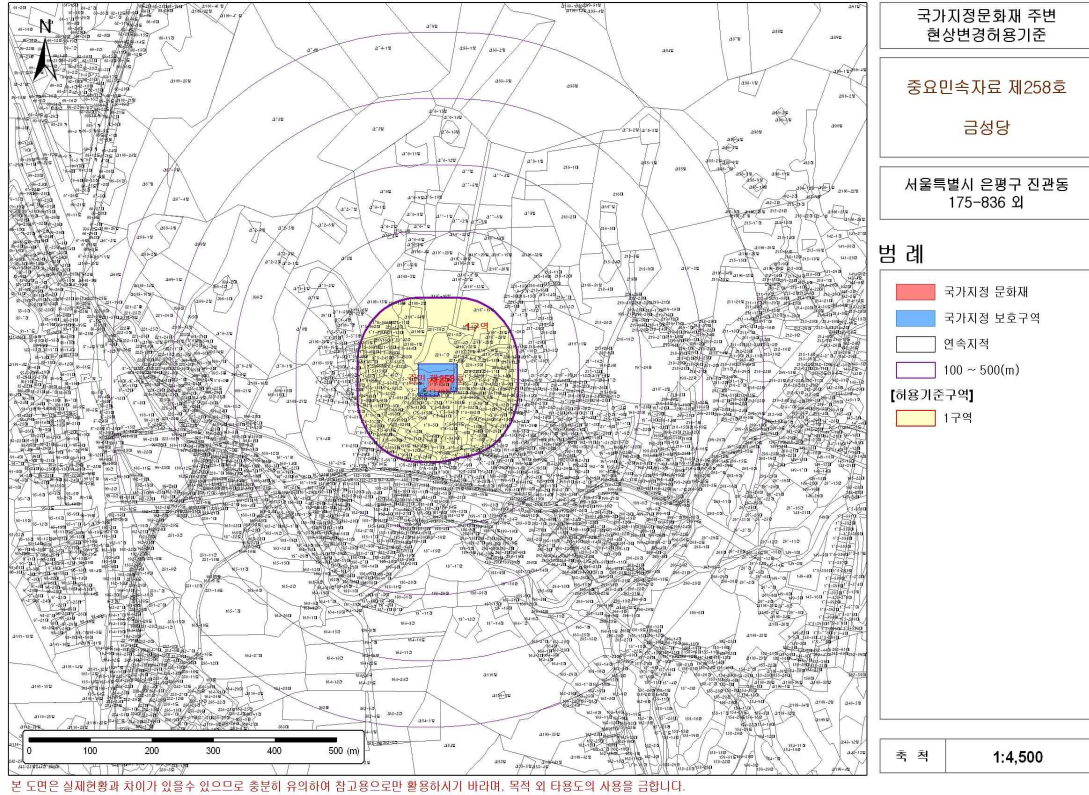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화재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절·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별첨: 세부내용>

1. 국가민속문화재 「서울 금성당」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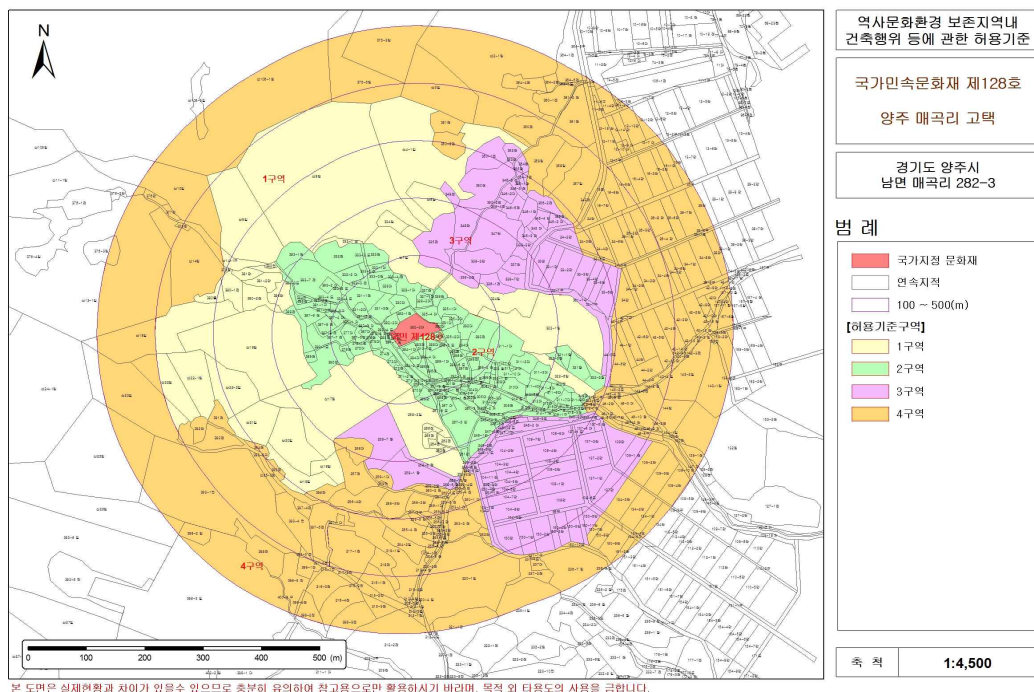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2.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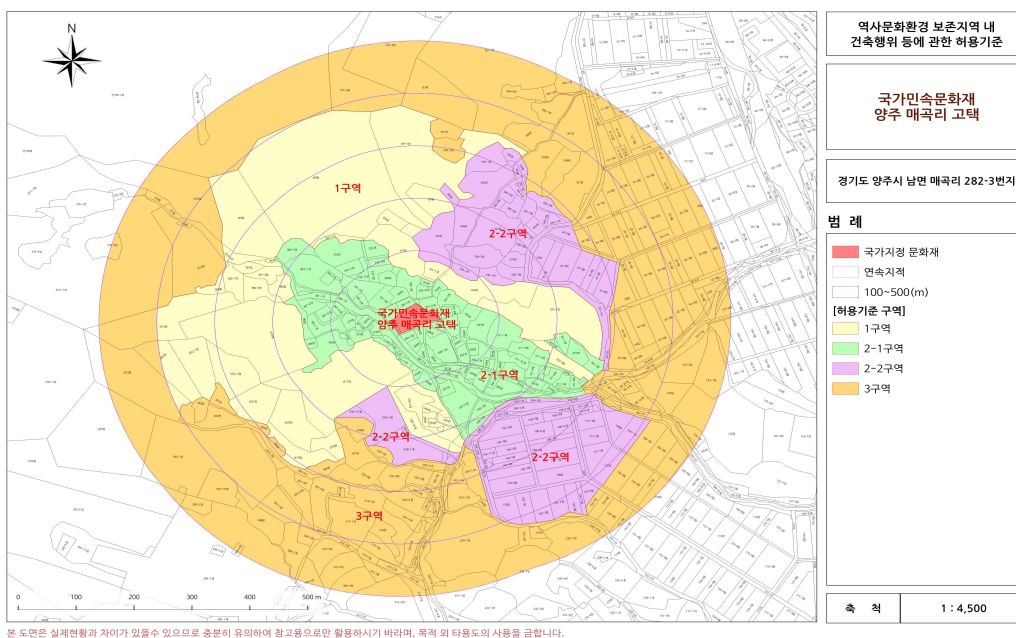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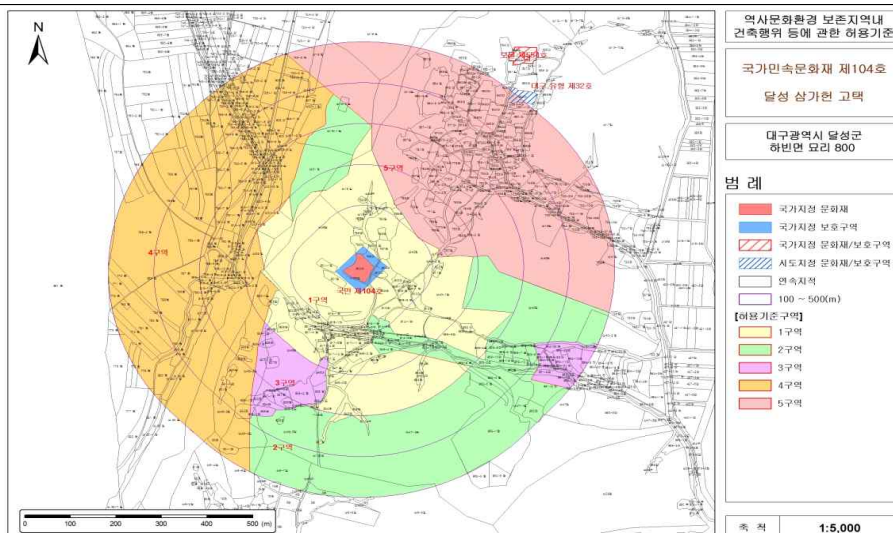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현 고택」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5구역	• 달성 태고정(보물 제5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철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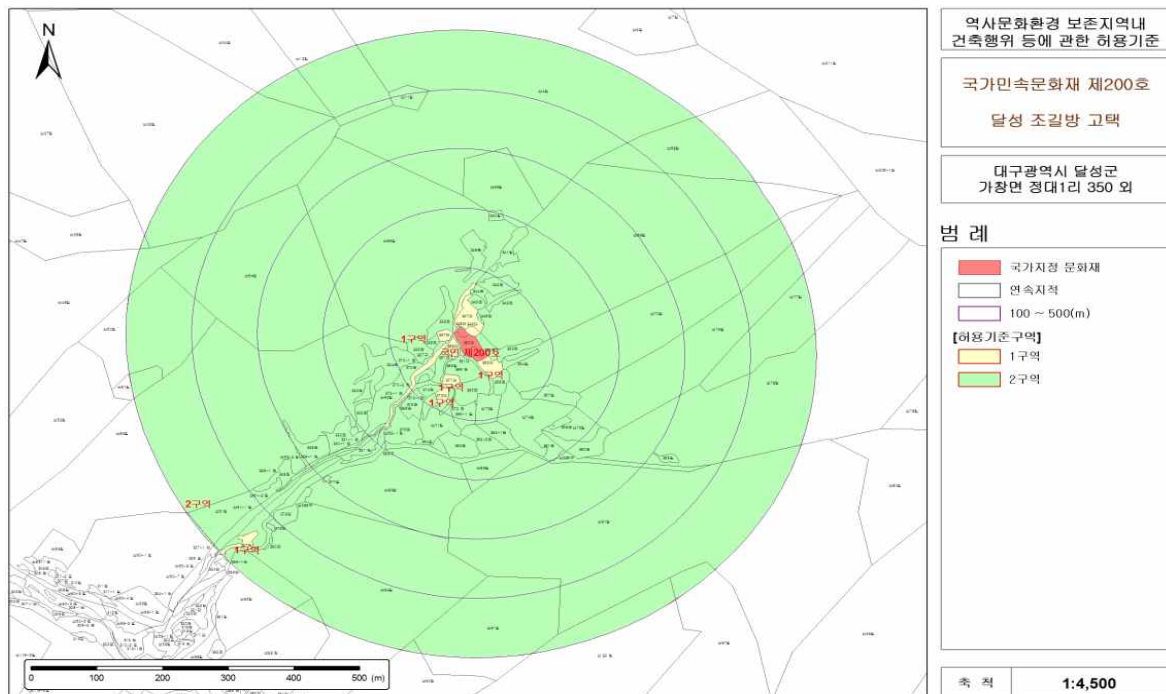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달성 태고정(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폐수배출시설 및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단, 2구역, 3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조길방 고택」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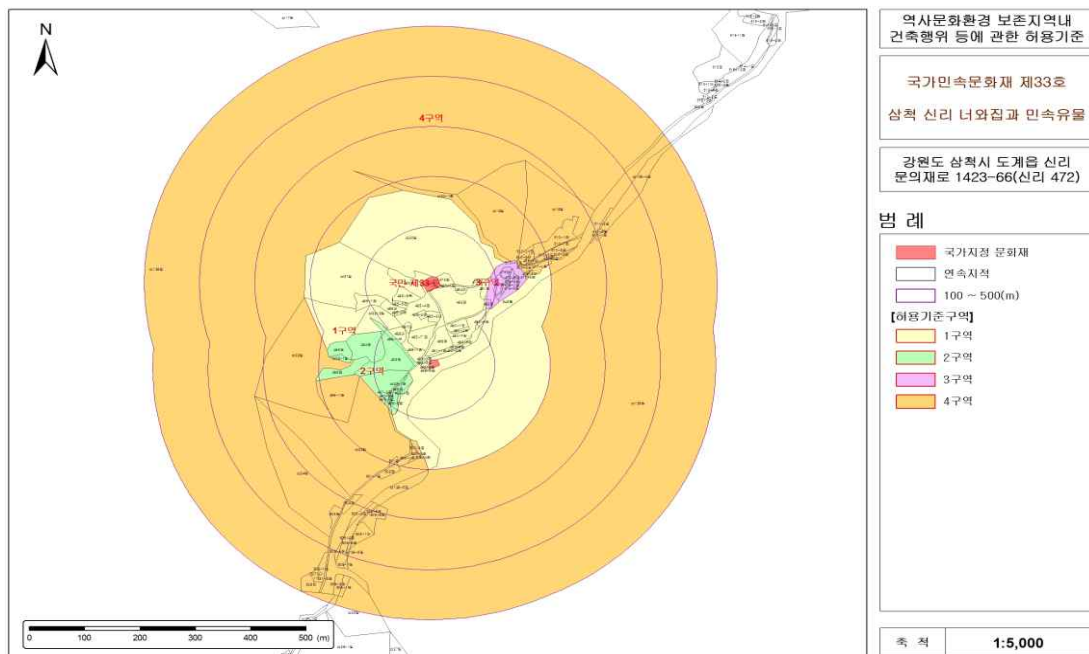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폐수배출시설 및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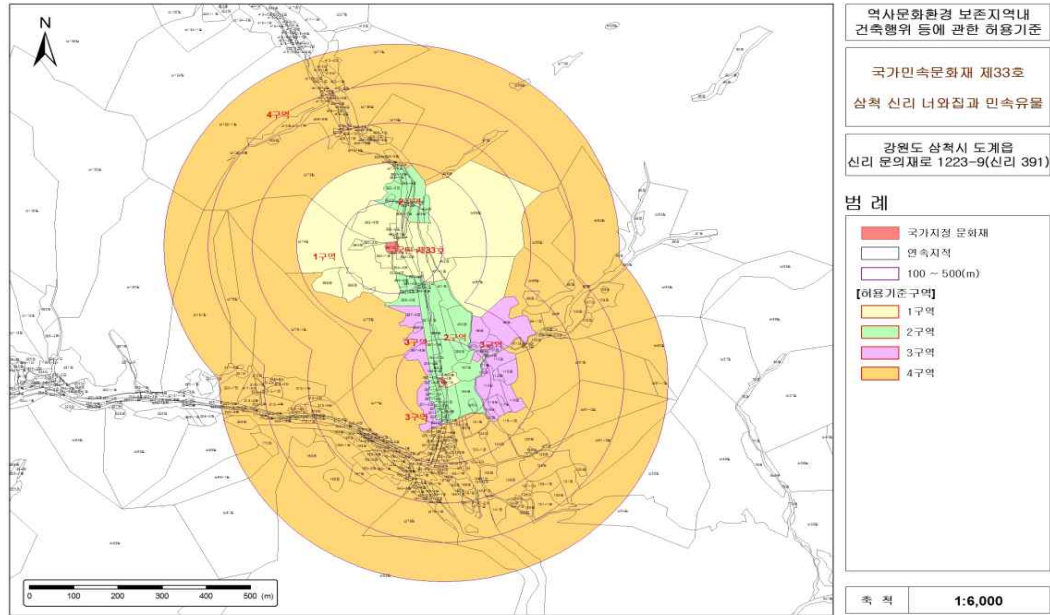
* 도면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보 고 사 항

23.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4건	허가 4건
남양주 궁집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	□ 남양주 궁집 주변 공동묘지 및 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포장 ○ 신청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19-4 외 4필지 ○ 이격거리: 보호구역에서 47m (1구역) ○ 사업내용: 공동묘지 및 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포장 - 신청면적: 93㎡ - 아스콘포장, 웬스철거, 경계석 낮춤 - 통신주 1주 이설, 볼라드 이설 등	○ 허가 - 기존 도로 진입구간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워 안전을 위해 도로폭 확보 필요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 화성시 서신면 (○○○)	□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도로 개설 ○ 신청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243 일원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43m (4구역) ○ 사업내용: 서신도시계획도로 1개소 개설공사 -(전체) 연장 823m, 폭원 8m, 면적 15,562㎡ -(허용기준 4구역) 연장 185m, 폭원 8m, 면적 1,920㎡, 절토 494㎡, 성토 352㎡	○ 허가 - 현재 사업구간 마을안길 도로폭(3m)이 협소하여 불편함, 사업부지와 문화재 사이에 도로(폭 20~25m)가 존치함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제주 성읍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	□ 제주 성읍마을 주변 공공wifi 옥외용합체 설치 ○ 신청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24-1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96m (1구역) ○ 사업내용: 공공wifi 옥외용합체 설치 - 옥외용합체(1,250×850×1,730)mm - 콘크리트 기초(1,000×1,800×400)mm - 철제 강관주 6,800mm - 통신관로 1,000mm	○ 허가 - 성읍 민속마을 공공wifi 제공 서비스 사업으로 메인 본체 설치건임 - 주변에 건물, 전봇대 및 도로 표지판이 존치해있고,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고성 어명기 고택	강원 고성군 (○ ○ ○)	☐ 고성 어명기 고택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 신청위치: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414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3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재해우려목 제거 - 참나무 3본 벌목 - 수고 14m, 흉고 40cm 내외	☐ 허가 -태풍으로 인해 기울어 주거지역을 덮칠 위험이 있는 참나무(3본)를 제거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	---	--